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6. 29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위원회(2007. 6. 29)
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

가. 제안이유

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국민제안규정」이 제정(2006. 5. 30 공포, 2006. 6. 4 시행)되고, 「공무원제안규정」이 전부개정(2006. 6. 15 공포, 2006. 7. 1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(1) 제안의 범위, 대상 확대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·행정서비스·행정문화·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

-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
-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

(2)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 제안에 대하여 3년간,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,
-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처리기간·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
- 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안의 성과를 높임

(3)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통한 제안 활성화

(안 제14조 내지 제16조)

-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구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
-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채택등급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 부여
- 우수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까지 부상금과 실시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안 활동을 적극 참여 하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6월15일 전부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구민 및 구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구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안 제4조에 마포구민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15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(금상:100만원, 은상:60만원, 동상:30만원, 장려상:10만원)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,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